#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18층 / 6개동 / 총 424세대 중 일반분양 2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세대별 공급면적(m²)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지하주차장등)		세대수	확정	(예비)
민영 주택	059.9700	59	59.9700	18.0832	78.0532	39.7824	117.8356	39	4	(20)
	059.9700T	59T1	59.9700	18.0832	78.0532	39.7824	117.8356	1	4	(20)
	076.8100	76	76.8100	21.6438	98.4538	50.9537	149.4075	15	1	(5)
	084.9800A	84A	84.9800	23.3778	108.3578	56.3735	164.7313	45	4	(20)
	084.9800AT	84AT	84.9800	23.3778	108.3578	56.3735	164.7313	1	-	
	084.9600B	84B	84.9600	22.9841	107.9441	56.3602	164.3043	69	8	(40)
	084.9600BT	84BT	84.9600	22.9841	107.9441	56.3602	164.3043	2	-	
	084.9900C	84C	84.9900	23.6997	108.6897	56.3800	165.0697	60	6	(30)
	084.9900CT	84CT2	84.9900	23.6997	108.6897	56.3800	165.0697	3	-	
합계									23	(115)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 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85m'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59	59T1	76	84A	84AT	84B	84BT	84C	84CT2	계
국가유	국가유공자		-	-	1(5)	-	2(10)	-	1(5)	-	5(25)
장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5)	-	1(5)	-	-	-	2(10)
10년 이상 정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5)	-	1(5)	-	2(10)
중소기업 근로자		-	-	-	1(5)	-	-	-	1(5)	-	2(10)
	서울특별시	1(5)	-	1(5)	1(5)	-	2(10)	-	1(5)	-	6(30)
장애인	인천광역시	1(5)	-	-	-	-	1(5)	-	1(5)	-	3(15)
	경기도	1(5)	-	-	-	-	1(5)	-	1(5)	-	3(15)
계		4(20)	-	1(5)	4(20)	-	8(40)	-	6(30)	-	23(115)

-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함.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
- ※ 괄호()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임.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4월 28일(금) 예정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com/)				
견 <del>본주</del> 택 개관	• 추후 안내 예정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 2023년 5월 08일(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 2023년 5월 17일(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1일(목) 예정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번지)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및 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п

# 특별공급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ul>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태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청약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m' 이하 전용면적 102m' 이하 전용면적 135m' 이하 모든 면적	<b>300만원</b>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b>250만원</b>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b>200만원</b>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천기관]  -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또는 그 유족 등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자: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복제과 - 경기도 장애인복제과 - 경기도 장애인복제과 - 경기도 장애인복제과 - 경기도 장애인복제 - 전체로							

### 구분 내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 당첨자 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선정방법 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 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53조제9호 미적용) 유의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항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 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 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홈페이지(http://새절역두산위브트 레지움.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 위치

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번지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com
- 분양문의
  - 1566-7749



## IV 사업지 위치도



## / 상품 특장점

#### 👜, 초·중·고등학교 모두 걸어서 누리는 **트리플 에듀 특권**







## (1) 단지 바로 옆에서 숨쉬는 **친환경 그린 프리미엄**







### 금 막힘없이 이어지는 쾌속 광역 교통망







## ি 내집마련의 첫 걸음! 달라진 부동산 규제완화

♡ 만 19세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가능

⊗ 재당첨제한 및 기존주택 처분 無

ⓒ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전매제한 1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실거주 의무 無

표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자격도,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지의 아해를 즐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본 홍보물의 개발계획 및 애정시함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면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익하시기 비라며 이는 시행사 및 사공사와는 무관합니다. 표 본 홍보물의 내용은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리토그램, 아이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즐기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